가정상담

6
2021

통권 454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5-3685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지난 5월 1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재교육을 진행했다. 11일에는 강당에서 고전 영화를 감상하며 문화적 소양을 키웠고, 27일에는 대강의실에서 「가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배인구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5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③
20 • 특집 ❷ | 서구의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고찰
30 • 가정폭력상담실
31 • 좋은 책
호박목걸이
32 • 어떻게 할까요
34 • 결혼과 인생(219) 영화 이야기
미나리 _ 김용언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는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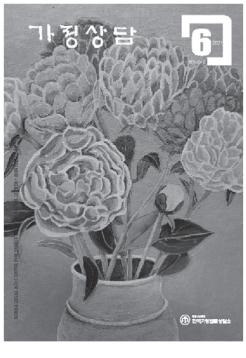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작약꽃〉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1. 6.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이 달의 메시지

법과 현실, 때로 너무 먼 그 사이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관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예전에 『삼십 년에 삼백 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라는 산문집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는 더할 수 없이 비극적이지만 이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 우리처럼 경제적, 사회적 도약을 이룩한 나라도 없기에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압축성장이 반드시 사회 전반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 등 정신적 측면에서의 깊이 있고 성숙된 자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상담소 또한 함께 발맞추어 왔습니다. 한국전쟁 후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 상담소는 문을 열었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가정 그 안에서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성차별로 고통당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삶을 대변해 왔던 것입니다. 법률구조 사업과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담소의 사업은 그것이 우리 사회 가정의 현실 그 자체에 기반을 둔 것이었기에 무엇보다 절실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와 발전, 현실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근거한 동성동본 금혼이나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반세기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말을 입이 아프도록 반복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또한 이러한 현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안의 대전제에는 관련 부처와 법원 등이 모두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양육비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상담소가 본격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과 양육비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지적한 바 있듯이 상담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혼 후 자녀양육과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해 왔고 마침내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를 비롯해 7월부터 시행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정지 처분이 불가하다니, 생계유지가 곤란한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 이를 제한할 것인지 의문이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과 양육비 문제가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문제와 순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국금지의 경우도 미지급 양육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시행령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 또한 양육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양육비 5,0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9. 10년 동안 지급할 양육비이며 이 정도면 미성년 자녀가 대부분 성년이 될 기간입니다.

또한 명단 공개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의 공적인 등장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자녀 양육비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명단 공개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해 왔던 양육비 채무자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와 같기 때문에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의 개정 내용은 모두 감치명령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감치는 이행명령 결정 후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부터 진행해야 하고 또 이행명령 결정 후 감치 신청을 하여 감치 결정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기적 지급 의무를 다시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치 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 명령이 공시송달로 종결된 경우 감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감치 명령 결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감치 신청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 내담자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과 실망감이 떠오르고 상담자는 본의 아니게 미안함과 깊은 위로를 건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담소 가족법 개정의 역사는 위와 같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루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이고, 우리의 미래인 그들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법이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법은 법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와 법원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다 깊이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집 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③ 가정폭력

행위자 수탁상담,
40대가 31.8%로 가장 많고,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무직 증가

I. 들어가는 말

본 상담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미국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231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1] 2019년에 위탁받아 2020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05명을 포함하면 2020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336명이었으며, 이 중 192명은 2020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20년에 상담이 종료된 192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항목별 분석 내용

1) 사건 관련

① 수탁 법원

2020년에 상담이 종결된 192명을 수탁한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이 97.5%(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법원명	수(명)	백분율(%)
서울가정법원	187	97.5
수원가정법원	2	1.0
대전가정법원	2	1.0
창원지방법원	1	0.5
합 계	192	100

2)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대가 31.8%로 가장 많아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무직 증가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6.3%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육아와 가사분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30년 이상인 경우에서의 폭력 증가

1) 서울가정법원 227명, 수원가정법원 1명, 대전가정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미국법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31명을 2020년에 수탁받았다.

① 남녀별

행위자 192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9명(77.6%), 여성이 43명(22.4%)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24명(55.8%)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2019년 24.2%(63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 행위자 43명 중 38명(88.4%)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 성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149	77.6	50	26.0
여 성	43	22.4	142	74.0
합 계	192	100	192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1.8%(6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7.1%), 3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가 28.5%(74명), 40대가 27.7%(72명), 30대가 25.4%(665명) 순이었던 2019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34.3%(6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와 50대가 각 21.9%(각 42명)로 많았다. 이는 30대가 29.5%(77명), 50대가 25.4%(66명), 40대가 25%(655명) 순이었던 2019년과 차이를 보였다.

구분 /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 대	-	-	1	0.5
20 대	11	5.7	12	6.3
30 대	41	21.4	42	21.9
40 대	61	31.8	66	34.3
50 대	52	27.1	42	21.9
60 대	19	9.9	24	12.5
70 대	7	3.6	1	0.5
80대 이상	1	0.5	4	2.1
합 계	192	100	192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5.3%(8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4.4%(66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42.7%(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4.8%(67명)로 나타났다.

구분 /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9	4.7	13	6.8
중 졸	13	6.8	12	6.3
고 졸	87	45.3	82	42.7
전문대졸	7	3.6	8	4.2
대 졸	66	34.4	67	34.8
대학원이상	10	5.2	10	5.2
합 계	192	100	192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31.3%(6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와 자영업이 각 15.6%(각 30명)을 차지했다. 특히 무직인 경우 2019년 6.2%(16명)와 비교하였을 때 11%(21명)로 그 비율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 13명(61.9%)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였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8.1%(7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3%(44명)을 차지했다.

구분 / 직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17	8.9	73	38.1
회사원	60	31.3	44	23.0
단순노무	30	15.6	19	9.9
자영업	30	15.6	24	12.5
교육직	2	1.0	7	3.6
전문직	7	3.7	5	2.6
기술직	11	5.7	7	3.6
운전	10	5.2	2	1.0
학생	2	1.0	1	0.5
공무원	1	0.5	1	0.5
종교인	1	0.5	-	-
무직	21	11.0	9	4.7
합 계	192	100	192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9.2%(5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8%(40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1.7%(8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100만원 미만	5	2.6	14	7.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4	12.5	22	11.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6	29.2	50	26.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	20.8	11	5.7
500만원 이상	28	14.6	15	7.8
일정한 수입이 없음	39	20.3	80	41.7
합 계	192	100	192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168명으로 87.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8.9%(17명)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는 모두 성인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남매관계, 형제관계, 자매관계, 이혼부부, 남녀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2020년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혼 부부가 2.1%(4명)로 4명 모두 (전)남편이 (전)아내를 폭행하였다. 4명 중 2명은 남편의 음주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폭력사건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다른 1명은 남편의 의심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하고도 주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 집에 살던 중 폭력이 발생한 경우였다. 또 다른 1명은 아내와 협의이혼하여 주거지도 분리된 상태였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해하고 아내의 주거지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이 발생한 경우였다.

구 분 / 관 계		수 (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151	78.7
	사실혼 부부	17	8.9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17	8.9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1	0.5
	형제 관계	1	0.5
	자매 관계	1	0.5
기 타	이혼 부부	4	2.0
합 계		192	100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168명)에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15.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1%(3명), 2017년 4.5%(6명), 2018년 6.9%(18명), 2019년 8.3%(19명)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 8.3%(19명)과 비교하였을 때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13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이 53.9%(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15.3%(2명)로 나타났다. 그 외 프랑스,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었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61%(1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11%(2명)로 나타났다. 그 외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니카라과 등이 있었다.

구 분 / 본 국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7	53.9	11	61.0
베트남	2	15.3	2	11.0
프랑스	1	7.7	-	-
몽골	1	7.7	1	5.6
필리핀	1	7.7	1	5.6
우즈베키스탄	1	7.7	-	-
이집트	-	-	1	5.6
이라크	-	-	1	5.6
니카라과	-	-	1	5.6
합 계	13	100	18	100

⑦ 혼인형태별[2)]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2%(121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혼인형태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21	72.0
(남)재혼-(여)초혼	7	4.2
(남)초혼-(여)재혼	17	10.1
(남)재혼-(여)재혼	23	13.7
합 계	168	100

⑧ 동거기간별[3)]

10년 이상 20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년 이상 5년 미만 순으로 폭력발생 많아

30년 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1.3배 증가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6.2%(44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19년 27%(62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감소하였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부, 남녀간 폭력발생과정 상이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44명은 성별에 따라 폭력의 발생과정이 상이하였다. 남성(33명)의 경우 첫째로 아내로부터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폭력을 사용하였다. 아내가 자신에게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혼잣말에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와 같이 아내의 말과 행동에 무시를 받아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었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42.4%, 14명). 둘째로 경제갈등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폭력을 사용하였다. 생활비 사용문제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 금전적인 문제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혹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상황이 악화된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21.2%, 7명). 한편 여성(11명)의 경우 81.8%(9명)가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부부의 폭력발생과정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2%(37명)로 많았는데, 2019년 15.2%(35명)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2010년 10.7%(8명)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거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부부 37명 역시 성별에 따라 폭력의 발생과정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29명)의 경우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할 때 자신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마찰하면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69%, 20명). 한편 여성(8명)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마트폰을 허락없이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불신의 문제로 폭력이 발생하였다(62.5%, 5명).

이처럼 비교적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거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1.3배 증가

한편 동거기간 30년 이상인 경우는 2019년 10.9%(25명)에 비해 13.7%(23명)로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남성(21명)의 경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격분하며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3.3%, 7명). 그 다음으로 아내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외출이 잦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23.8%, 5명). 여성(2명)의 경우에는 오랜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68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68명)에 국한하였다.

기간 지속된 남편의 외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1명), 오랜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1명) 폭력이 발생하였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노년세대는 남편의 이미 고착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이에 더해 오랜기간 미해결 상태로 축적되어 온 부부갈등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고령사회에서 부부갈등으로 빚어지는 한 현상이라고도 보여진다.

구 분 / 동거기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5	3.0
1년 이상 ~ 5년 미만	30	17.8
5년 이상 ~ 10년 미만	37	22.0
10년 이상 ~ 20년 미만	44	26.2
20년 이상 ~ 30년 미만	29	17.3
30년 이상	23	13.7
합 계	1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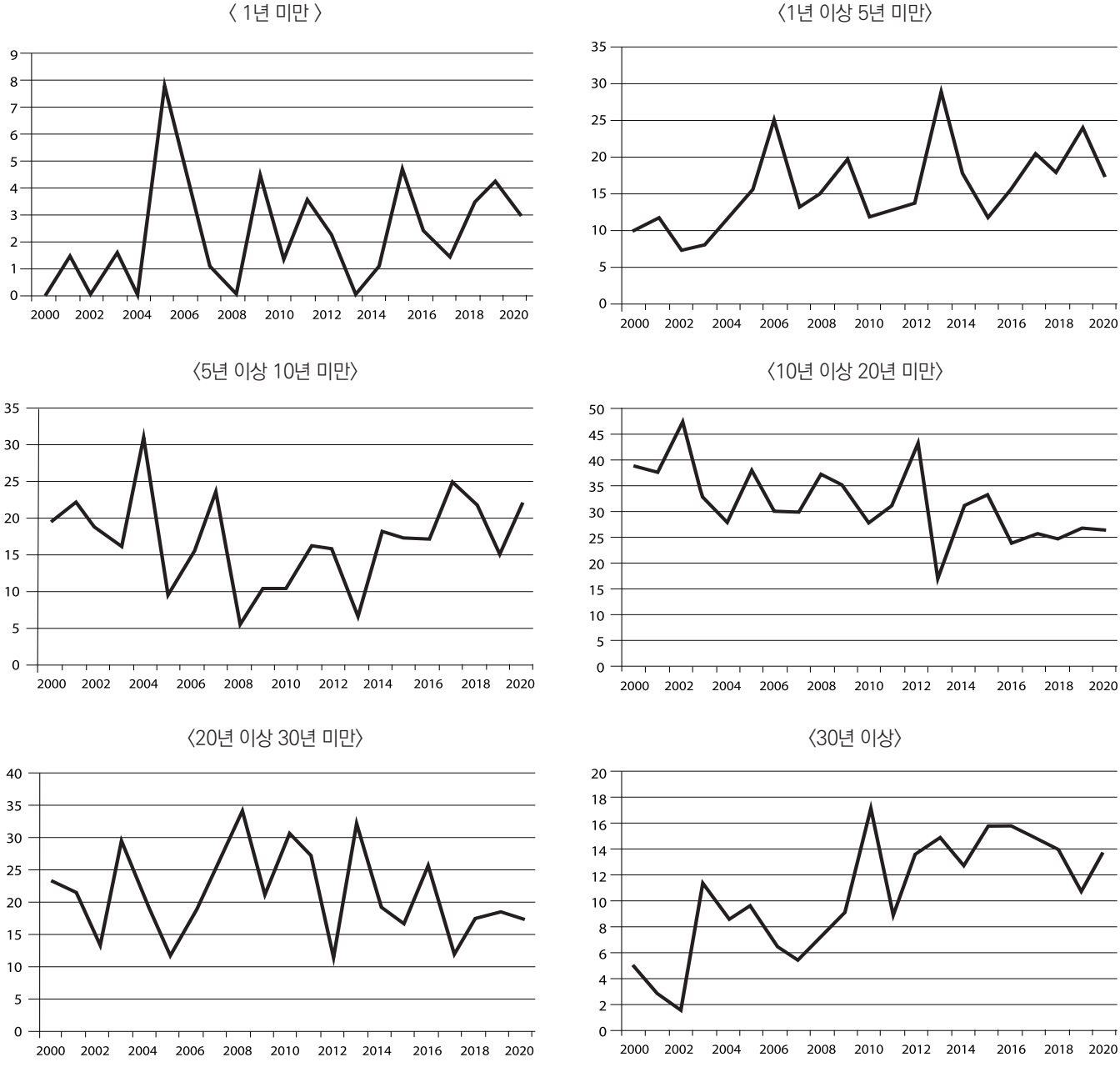

[그림 1. 2000년-2020년 동거기간 추이 분석]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64.6%로 가장 많아
아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남편에게 폭력한 경우 많아

2019년에 비해 협박 및 특수협박 사건 비율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물건으로 때리고,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심한 신체적 폭력 비율 2배 가까이 증가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64.6%(124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19년 59.2%(154명)보다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4]이 9.2%(24명)에서 5.3%(10명)로 감소하였다.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2.7%(7명)에서 4.7%(9명)로 그 비율이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폭력유형 \ 구 분		수 (명)	백분율 (%)
부부관계[5]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124	64.6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9	9.9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20	10.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6	3.1
	아내 및 자녀폭력	3	1.6
부모-자녀 관계	자녀폭력	7	3.7
	부모폭력	9	4.7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1	0.5
기타 가족관계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1	0.5
	형에 의한 동생폭력	1	0.5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0.5
합 계		192	100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20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0%(6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결혼생활 동안에 남편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남편 또는 자신의 실직 등 가정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격적인 태도인 폭력으로 표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60%, 12명).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7.4%(187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도 2.6%(5명)에 달했다.

폭력수준 \ 구 분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187	97.4
1주 이상 ~ 5주 미만	5	2.6
합 계	192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49%(94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가 9.4%(18명)로 많았으며 이는 2019년 8.4%(22명)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10.5%(20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의 4.6%(12명)에 비해 그 비율이 2.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4)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3명, 1.6%)도 포함하였다.
5) 이혼부부(4명)의 경우 전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부부관계의 각 항목에 포함하였다. 4명의 폭력유형은 모두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었다.

구 분 / 폭력수준	수(명)	백분율(%)
폭행	94	49.0
재물손괴	18	9.4
특수협박	17	8.9
특수폭행	11	5.7
폭행, 재물손괴	11	5.7
상해	9	4.7
폭행, 특수협박	5	2.6
존속폭행	4	2.1
협박	3	1.6
특수상해	2	1.0
폭행, 협박	2	1.0
폭행치상	1	0.5
특수재물손괴	1	0.5
상해, 폭행	1	0.5
존속폭행, 폭행	1	0.5
특수폭행, 존속폭행	1	0.5
상해, 폭행, 협박	1	0.5
존속폭행, 존속협박	1	0.5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1	0.5
특수상해, 특수협박	1	0.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미수	1	0.5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1	0.5
상해, 강간	1	0.5
상해, 특수협박	1	0.5
폭행, 상해, 재물손괴	1	0.5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1	0.5
보호처분집행감독	1	0.5
합 계	192	100

④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192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적 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상담처분을 이행하면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하였던 폭력의 정의를 상대방의 정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재물손괴도 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등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52.6%(101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5.4%(118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0년 2.7%(2명)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는 47.4%(91명)으로 2019년 37.3%(97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0년 9.3%(7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외 정서적 폭력 중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2019년 1.9%(5명)에 비해 7.3%(1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든 결혼생활을 지켜가는 원동력인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경제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3%(16명)이었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가 6.3%(12명)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부부가 의논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 및 교육, 주택

항 목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192(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92(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91(47.4)	101(52.6)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101(52.6)	91(47.4)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178(92.7)	14(7.3)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181(94.3)	11(5.7)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81(94.3)	11(5.7)
경제적 폭력	176(91.7)	16(8.3)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180(93.8)	12(6.3)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184(95.8)	8(4.2)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81(94.3)	11(5.7)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183(95.3)	9(4.7)
통 제	144(75.0)	48(25.0)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60(83.3)	32(16.7)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59(82.8)	33(17.2)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158(82.3)	34(17.7)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159(82.8)	33(17.2)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160(83.3)	32(16.7)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189(98.4)	3(1.6)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157(81.8)	35(18.2)
18. 사회활동(직업갖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159(82.8)	33(17.2)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159(82.8)	33(17.2)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191(99.5)	1(0.5)
성적 폭력	190(99.0)	2(1.0)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191(99.5)	1(0.5)
2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191(99.5)	1(0.5)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191(99.5)	1(0.5)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191(99.5)	1(0.5)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192(100)	-
경미한 신체적 폭력	39(20.3)	153(79.7)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07(55.7)	85(44.3)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92(47.9)	100(52.1)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95(49.5)	97(50.5)
심한 신체적 폭력	60(31.3)	132(68.8)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19(62.0)	73(38.0)
30.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65(85.9)	27(14.1)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17(60.9)	75(39.1)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168(87.5)	24(12.5)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50(78.1)	42(21.9)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151(78.6)	41(21.4)

을 매매하거나 임대 하는 문제, 및 재산관리를 행위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며 카드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생활비를 책정하고 재산관리를 하는 등 평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통제의 유형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하는 경우'가 18.2%(3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하는 경우'가 17.7%(34명)로 많았다. 이러한 통제의 유형은 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이나 SNS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통제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1%(2명)로 나타났다. 무력을 사용하여, 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였다.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성적 폭력으로 이어져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9.7%(153명)로 나타나 2019년 84.2%(219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2.1%(100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9년 56.2%(146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10년 전인 2010년 44%(33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미한 신체적 폭력유형은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진 경우'로 44.3%(85명)으로 2019년 37.3%(97명)보다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8.8%(132명)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9.1%(75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9년 48.1%(125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행위자의 폭력이 몇 번에 그치지 않고 5회 이상 수회에 걸쳐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19년 12.7%(33명)에 비해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가 21.9%(42명)로 1.7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 13.1%(34명)에 비해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가 21.4%(41명)로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 8.1%(21명)에 비해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린 경우'가 14.1%(27명)로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부부간 불신
→ 경제갈등 순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2019년에 비해 경제갈등 증가 - 코로나19로 실직, 가정내 빚 증가가 이유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1.1%, 137건), 부부간 불신(17%, 75건), 경제갈등(13.6%, 60건) 순으로 나타났다.[6)]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1.1%, 137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6)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때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다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자신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사용했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식탁에 자신의 젓가락을 올려놓지 않았다고', '오디오 볼륨을 줄이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여자가 운전한다고 설치다가 자동차 앞범퍼를 파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36건, 8.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고(22건, 5%),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중독 등 자녀의 생활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14건, 3.2%).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7%, 75건)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이나 SNS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면서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14건, 9.9%).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갈등(13.6%, 60명)으로 2019년 11.4%(65건)보다 그 비율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이로 인한 빚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빈곤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로 인한 무력감과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정불화로 이어져 갈등이 증폭되면서 폭력사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간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구 분 / 폭력행사 원인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137	31.1
부부간 불신	75	17.0
경제갈등	60	13.6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59	13.4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20	4.5
부모-자녀간 갈등	19	4.3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14	3.2
육아문제	22	5.0
시가와의 갈등	13	2.9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	9	2.0
처가와의 갈등	8	1.8
기타 가족간의 갈등	3	0.7
종교 갈등	2	0.5
합 계	441	100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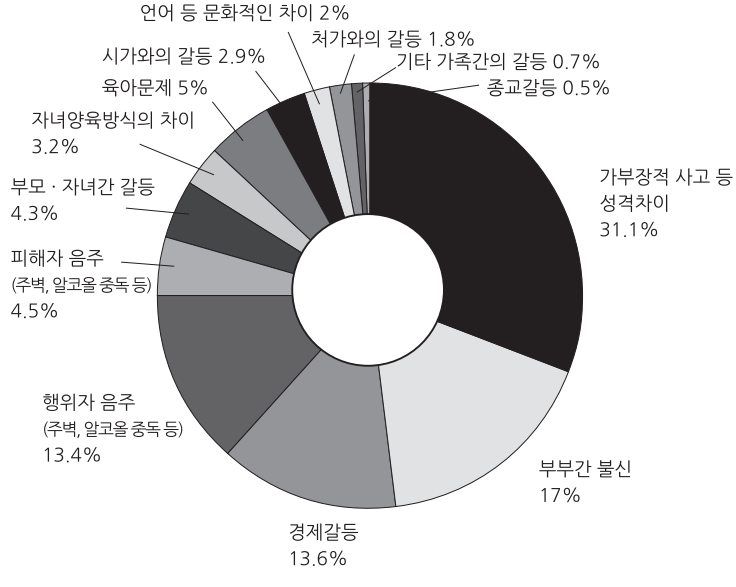

[그림 2. 폭력행사 원인]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83.5%
행위자 중 76%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26%(50명)에 달했는데, 2019년 16.2%(42명)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76%(146명)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는 전체 192명 중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였다(80.2%, 154명).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 상담대상자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46	24.0
행위자 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상담	146	76.0
합 계	192	100

② 상담방법별

2020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워졌기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상담으로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역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20년도에는 1,812건의 개별상담, 260건의 부부상담, 8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20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5회로 51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8회로 30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15회 실시되었으며,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2회 실시되어 3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둥지교실」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5회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7회의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55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도

에는 총 336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도에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5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38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라오니 모임이 확장된 형식의 라오니캠프는 문화체험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기에 가정폭력피해여성 15명이 각자 자유롭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및 대면으로 유연하게 진행한 결과, 2020년에 상담이 종료된 192명 중 43.2%(83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구 분 /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109	56.8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9	4.7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집단상담	35	18.2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39	20.3
합 계	192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7.7%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167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8.2%(165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3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구 분 /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165	98.2
폭력재발 함	3	1.8
합 계	168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1%(97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동거	97	57.7
냉담 ·동거	22	13.1
별 거	17	10.1
사실혼 해소	4	2.4
협의이혼	5	3.0
재판이혼(중)	5	3.0
기 타[7]	18	10.7
합 계	1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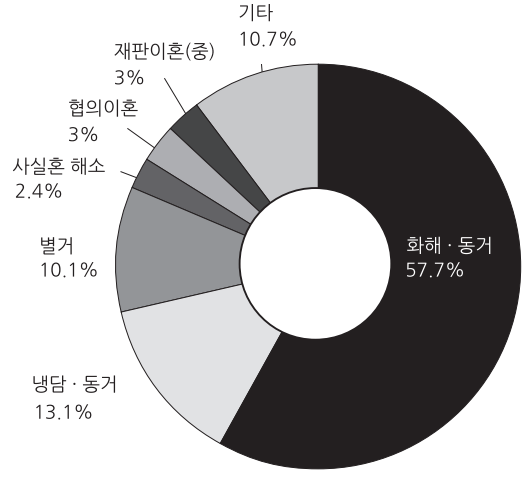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7) 기간연장(4.8%, 8명), 보호처분 변경(3.6%, 6명), 보호처분 취소(1.8%, 3명), 타기관으로 연계(0.6%, 1명) 등을 포함하였다.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17명),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88.2%(15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2명은 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구 분 /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15	88.2
폭력재발 함	2	11.8
합 계	17	100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각 41.2%(각 7명)으로 많았다.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수(명)	백분율(%)
주거지 분리	7	41.2
화해 ·동거	7	41.2
냉담 ·동거	1	5.9
기 타[8]	2	11.7
합 계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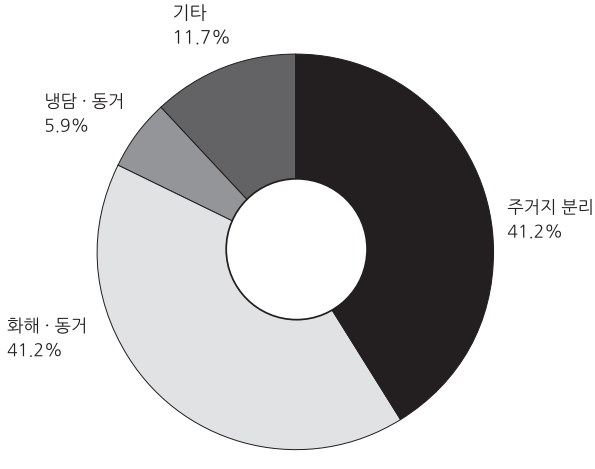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III. 맺음말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상담을 종료한 행위자는 총 192명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의 중요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149명(77.6%), 여성이 43명(22.4%)로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43명 중 38명(88.4%)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위자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가 2019년 6.2%(16명)와 비교하였을 때 11%(21명)로 그 비율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 13명(61.9%)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였다.

셋째,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168명),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15.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1%(3명), 2017년 4.5%(6명), 2018년 6.9%(18명), 2019년 8.3%(19명)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 8.3%(19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26.2%, 44명), 5년 이상 10년 미만(22%, 37명), 1년 이상 5년 미만(17.8%, 30명) 순으로 폭력발생이 많았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중 남편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42.4%, 14

8) 보호처분 변경(11.8%, 2명)을 포함하였다.

명),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한 경우가 많았다(81.8%, 11명).

다섯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13.7%(23명)로 2019년 10.9%(25명)에 비해 그 비율이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부부갈등으로 빚어지는 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여섯째, 폭력의 유형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64.6%(124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20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0%(6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결혼생활 동안에 남편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남편 또는 자신의 실직 등 가정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격적인 태도인 폭력으로 표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60%, 12명).

일곱째,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49%(94명)로 가장 많았지만, '재물손괴'와 '협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여덟째, 행위자 192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해자는 언어적 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 역시 폭력이라고 인정하며 폭력에 대해 행위자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9.7%(153명)로 나타났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2.1%(100명)로 가장 많았고,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미한 신체적 폭력유형은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진 경우'로 44.3%(85명)으로 2019년 37.3%(97명)보다 그 비율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8.8%(132명)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9.1%(75명)로 가장 많았고, 2019년에 비해 증가한 심한 신체적 폭력유형은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12.7%→21.9%),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13.1%→21.4%),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린 경우'(8.1%→14.1%)로 그 비율이 각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아홉째,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1.1%, 137건), 부부간 불신(17%, 75건), 경제갈등(13.6%,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열째,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168명) 98.2%(165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7.7%(97명)로 가장 많았다. 본소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차연실 상담위원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의 다수부모가족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Co-parenting before conception. The Low Countries' approach to intentional multi-parent families

Prof. dr. Ingrid Boone

다수부모 제도는 종래의 2인 부모 법리에서 벗어나 부모 외의 다른 성인이 부모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 개의 주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등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2인 이상의 성인에게 법적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출현은 의학과 사회발전에 따른 인공생식의 발전과 싱글 혹은 동성 커플에 의한 육아 욕구의 증대 등으로 부모가 될 의도로 공동육아에 관한 합의를 통해 아이를 갖고 함께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 두 명 이상의 의도된 부모들로 구성된 다수부모 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다수부모 가족의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보호 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서구의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소개를 위해 벨기에 KU Leuven 대학 Ingrid Boone 교수의 'Co-parenting before conception. The Low Countries' approach to intentional multi-parent families'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하여 싣는다.* 이 논문의 기초가 된 조사연구는 2017년 6월에 종료되었으며, 본 논문은 온라인 저널 'Family & Law'에 실린 것으로 2017년 6월에 더블린에서 열린 '가족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계회의'와 동년 7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가족법학회 제16차 세계회의'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I. 서론(Introduction)

의학과 사회의 발전은 아이를 갖고 함께 양육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두 명이 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이끌어 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공동육아에 관한 합의(co-parenting arrangements)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 각 부모의 역할과 돌봄 및 재정적인 의무들의 분배를 포함하고 있다.

* 본 논문의 저자는 번역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원전은 다음과 같다.
Prof. dr. Ingrid Boone, 'Co-parenting before conception. The Low Countries'approach to intentional multi-parent families', Family & Law February2018, DOI: 10.5553/FenR/.000034
http://www.familyandlaw.eu/tijdschrift/fenr/2018/02/FENR-D-18-001.pdf

이러한 의도된 다수부모가족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아는 정자기증자의 도움으로 아이를 임신한 레즈비언 커플이나 이성 커플 혹은 남성 동성커플과 공동육아를 하고자 하는 싱글 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남성 동성커플도 역시 여성 동성커플과 공동육아를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을 새로 만들려는 욕구는 있으나 자신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며, 둘 다 자녀 양육에 있어 생물학적인 부모로 개입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인공생식, 싱글 혹은 동성 커플에 의한 육아, 육아와 부모 간의 분리 그리고 두 가구에서의 자녀 양육 등과 같은 몇 가지 현상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가족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것은 육아계획(parental project)에 있어 세 명의 의도된 부모 혹은 때로는 심지어 네 명의 의도된 부모들이 연관된다는 것이다. 의도된 다수부모가족들은 가족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다른 법적 시스템에서처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여된 법적인 부모의 수는 두 명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두 명의 부모로 이루어진 양(兩)부모 모델은 다수부모가족 안에 있는 각각의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자기증자와 함께 공동육아를 하는 여성 동성 커플을 생각해 보자. 벨기에와 네덜란드 법은 어머니의 여성 파트너가 자녀의 법적 부모(공동 모: co-mother)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육아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모와 공동 모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는 법적 아버지(legal father)를 가질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법이 다수부모가족들을 수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긴다. 벨기에 상원은 최근 이런 질문을 의회 논의에 붙였다.

2014년 네덜란드는 법에서 두 명 이상의 부모가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육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부모의 자격 재평가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ttee on the Reassessment of Parenthood)'를 구성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법적인 다수부모가 일정한 조건하에 법적으로 규율되어야 함을 권고했다.[1] 이 보고서가 기여한 점은 다음 두가지 질문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첫째는, 다수부모 육아 합의(multi-parenting arrangements)를 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벨기에의 법적 육아(legal parentage)와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에 관한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가족법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multi-parent families)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이 질문을 위해 우리는 법적 다수부모에 관해 네덜란드 정부위원회가 만들어 낸 권고 사항들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II. 다수부모 육아 합의에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 (Legal position on persons involved in multi-parenting arrangements)

다수부모 육아 계획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도된 부모들은 아이가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해 합의를 한다.[2] 이것은 가끔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의도한 부모들이 모두 합심하여 어느 정도 명확히 하고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장래 합의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도된 부모들이 자신들이

1) *Kind en Ouders in de 21ste eeuw. Rapport van de Staatscommissie Herijking Ouderschap*, The Hague, 2016, p. 427-434. English summary of the report available at https://www.government.nl/ documents/reports/2016/12/07/child-and-parent-in-the-21ste-century (hereafter: *Report Government Committee*).

2) Empirical research from the Netherlands demonstrates that almost 90% of intentional multi-parent families (established through the birth of a child in a lesbian relationship conceived with the help of a known donor) make arrangements prior to the child's conception (M.V. Antokolskaia, W.M. Schrama, K.R.S.D. Boele-Woelki, C.C.J.H.Bijleveld, C.G. Jeppesen de Boer and G. Van Rossum, *Meeroudergezag: een oplossing voor kinderen met meer dan tweeouders? Een empirisch en rechtsvergelijkend onderzoek*, the Hague:Boom Juridische Uitgevers 2014, p. 23).

하고자 하는 모험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동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정의 단계이다.[3] 의도된 부모들은 그들의 상호 위치와 아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지위에 관해 확신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들은 법적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수부모 육아 합의들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법적 혈통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벨기에 법에 관한 논의는 이런 점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4]

A. 법적 혈통(Legal Parentage)

거의 모든 서구 법률시스템의[5] 경우에서와 같이 벨기에 법률에서도 자녀는 최대한 두 명의 법적 부모를 가질 수 있다.[6] 부모로서의 책임들은 법적 혈통에 달려있다.[7] 벨기에 민법에 따르면 아이의 법적 부모는 자동적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는데, 이런 법적 부모는 아이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8] 이러한 양(兩)부모 모델은 역사적인 요소들과 생물학적인 요소들에 의해 설명된다. 혈통은 전통적으로 아이와 그 부모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대체로 이러한 관계는 임신시킨 어느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 후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 이어진 혈연(blood ties)에 의해 지배된다. 남성과 여성 둘 다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모성과 법정 부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9] 혈연은 현대의 부자관계 법률(modern-day filiation law)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법은 법적 혈통이 생물학적인 실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했다.[10]

의학적 보조생식(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의 경우에는 미래의 부모의 의도(아이를 임신하고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가 아이와 관련된 법적 혈통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증자는 법적 혈통을 주장할 수 없다.[11] 이것은 이성커플이 기증된 정자 혹은 난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같은 결과임을 의미한다(아이를 갖고자 했고 그들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된다. 적어도 두 부모 중 최소한 하나가 아이와 유전적인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핵가족의 개념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의학적 보조생식에 대한 접근은 이성 커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싱글 여성도 법적 요건(예: 나이 요건[12])을 갖춘다면 의학적 보조생식 기술을 이용해 부모가 될 수 있다. 그 여성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없어도 기증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가 둘에서 하나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모델로부터의 의도적인 일탈은 법에서도 허용된다.

벨기에 법은 여기에 추가하여 동성 커플이 둘 다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최근까지 이것은 오직 입양을

3) M. Vonk, 'The role of formalised and non-formalised intentions in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Dutch Law' in: K. Boele-Woelki(ed.), *Debates in family law around the globe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Antwerp: Intersentia 2009, p. 195.

4) This section of the paper is based on a part of my inaugural speech, published in 2016: I. BOONE, *Gedeeld geluk. Ouderschap in intentionele meeroudergezinnen, Acta Falconis XIII*, Antwerp, Intersentia, 71 p.

5) See K. Sikorska, T. Kruger and F. Swennen, *Meerouderschap en meeroudergezag, Onderzoek uitgevoerd in opdracht van de staatscommissie Herijking ouderschap*, Onderzoeksgroep Persoon & Vermogen University of Antwerp 2015, p. 19-39.

6) See, however, *infra*, B. Adoption.

7) Constitutional Court 8 October 2003, nr. 134/2003; Y.-H. Leleu, *Droit des personnes et des familles*, Brussels: Larcier 2016, p. 745; T.Wuyts, *Ouderlijk gezag. Een coherente gezagsregeling voor minderjarigen*, Antwerp: Intersentia 2013, p. 87, 127-129 and 671.

8) Article 373 and 374, § 1 Belgian Civil Code.

9) J. Monballyu, *Geschiedenis van het familierecht. Van de late middeleeuwen tot heden*, Leuven: Acco 2010, p. 91.

10) F. Swennen, *Het personen- en familierecht. Een benadering in context*, Antwerp: Intersentia 2017, p. 435; G. Verschelden, *Handboek Belgisch Personen- en familierecht*, Bruges: die Keure 2016, p. 5-6.

11) Article 27 and 56 Act of 6 July 2007 on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12) Article 4 Act on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통해서만 가능 했었다.[13]

더 나아가서 법은 레즈비언 커플에게까지도 이를 확장했다. 2015년부터 아이는 태어나면서 두 명의 여성(아이의 모와 그녀의 여성 파트너)과 법적 혈연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14] 법적인 공동모(legal co-motherhood)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모와 결혼한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15] 만약 아이의 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여성 파트너가 아이를 인지함으로써 혹은 공동모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녀의 여성 파트너는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다.[16] 공동모의 도입은 의도된 부모의 법률적 안건등록을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17] 모의 여성 파트너의 부모의 자격(parenthood)은 임신에 대한 그녀의 동의에만 근거한다. 입법자는 이와 동시에 아이가 두 명 넘는 부모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다.[18] 그래서 법은 레즈비언 커플과 자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사실상 세 명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두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빠).

B. 입양(Adoption)

입양은 입양인과 입양된 아이 사이에 법적 혈통(legal parentage)과 아주 유사한 법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완전입양(Strong adoption)의 경우 아이와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와 원부모(original parents) 사이의 관계를 대체한다.[19] 벨기에 법은 일반입양(simple adoption)도 규정한다. 이 경우 아이는 원래의 부자관계 연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입양을 통해 입양된 아이는 자신의 원부모 외에 하나 혹은 두 명의 부모를 갖게 된다. 아이는 그래서 4명까지 법적 부모를 갖는다. 이런 면에서 일반입양은 다수부모의 형태를 대표한다.[20] 하지만 일반입양은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른들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입양부모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21] 원부모는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갖지 않는다. 아이가 계부모(stepparent)에 의해 입양된다면 원부모와 그의 배우자 혹은 아이를 입양한 파트너가 (공동으로) 부모의 책임을 갖는다.[22] 이 경우 아이의 또 다른 원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갖는 자가 아니다. 두 부모라는 제한은 부모의 책임이 관련되는 한 계속 적용되고 있다.[23]

예를 들어 싱글 여성과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동성의 남성 커플의 사례를 보자. 여성은 두 남자 중 하나의 정자로 임신을 한다. 법적인 모(legal motherhood)라는 것은 출산모(birthmother)의 이름이 나타나는 출생증명서를 기초로 형성된다.[24] 출산모의 동의로 생물학적인 부는 자를 인

13) Act of 18 May 2006 amending a number of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n order to enable adoption by persons of the same sex, *Belgisch Staatsblad* 20 June 2006.

14) Act of 5 May 2014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liation of the comother, *Belgisch Staatsblad* 7 July 2014, entry into force 1 January 2015.

15) Article 325/2 Belgian Civil Code.

16) Article 325/4 and 325/8 Belgian Civil Code.

17) L. Pluym, 'Belgisch afstammingsrecht, quo vadis?' in: Vlaamse Conferentie bij de Balie te Gent (ed.), *Personen- en familierecht*,Brussels: Larcier 2015, p. 138-139.

18) Article 329 Belgian Civil Code.

19) Article 356-1 Belgian Civil Code. In case of strong adoption by a stepparent, the child does not cease to be part of the family of the spouse or the partner of the adopter (article 356-1 Belgian Civil Code).

20) F. Swennen, 'Wat is ouderschap?', *Tijdschrift voor Privaatrecht,* 2016 vol.1,p.77.

21) Article 353-8 Belgian Civil Code.

22) Article 535-9 (simple stepparent adoption) and article 356-1 Belgian Civil Code (strong stepparent adoption).

23) L. Brunet and J. Sosson, 'L'engendrement à plusieurs en droit comparé: quand le droit peine à distinguer filiation, origines et parentalité'in: H. Fulchiron and J. Sosson (eds.), *Parenté, Filiation, Origine. Le droit et l'engendrement à plusieurs*, Brussels: Bruylant 2013, p. 35; G. Hiernaux, 'L'autoritéparentale et le rôle des tiers'in:N. Gallus (ed.), *Les recompositions familiales. Nouveaux enjeux de la parentalité et de la filiation*, Limal: Anthemis 2015, p. 84-85; T.Wuyts 2013, p. 917.

24) Article 312 Belgian Civil Code.

지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부가 된다.[25] 그러나 부의 파트너는 아이와 법적 혈연관계(legal parentage)가 없다. 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26] 그러나 그러한 입양은 법적인 모자관계(legal mother-child relationship)를 침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두 명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배제하고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27]

C.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벨기에 법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이는 최대한 두 명의 부모를 갖는다(모와 부, 모와 공동모 혹은 입양 후 두 명의 아버지). 이러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 하고도 나눌 수 없으며,[28]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양육에 도움을 주거나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과도 나눌 수 없다. 결혼한 레즈비언 커플과 공동육아를 하기로 계약한 한 남자의 예를 보자. 아이는 그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하자.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그녀의 배우자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된다. 아이의 모와 공동모로서 그리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갖는 자가 된다.[29] 만일 그 모의 배우자가 아이의 임신에 동의하였다면, 그 모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모 자격은 결코 다투어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남성에 대한 법적 아버지 자격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공동육아 합의에 관여한 그 남성은 부모의 책임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남자는 제3자이며 그 아이에게는 남인 것이다.[30] 이것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법적 부모만이 아이가 자신들과 같이 살 곳을 정하고 아이의 인생에 대한 일상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31] 물론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법적 부모는 또한 아이의 건강과 교육, 종교적인 양육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32] 또한 법적 부모는 아이의 민사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아이의 입양 및 결혼에 대한 동의권,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거나 개명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사건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도 아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33] 제3자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은 아이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을 뿐이다.[34] 벨기에 민법 제203조에 의하면 법적 부모는 자녀에 대해 주택과 생활, 건강, 감호, 양육, 교육 및 개발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법적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이러한 의무는 공공질서 중 하나이다.[35] 따라서 이러한 책임들을 일부 혹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계부모를 제외하면[36]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의 생활에 기여할 책임이 없다.[37]

25) Article 319 and 329*bis* Belgian Civil Code.
26) Article 343, § 1 and 344-1 et seq. Belgian Civil Code.
27) Article 353-9 Belgian Civil Code.
28) F. Swennen, 'Rechten van niet-ouders met betrekking tot minderjarigen' in: P. Senaeve, F. Swennen and G. Verschelden (eds.), *Ouders en kinderen*, Antwerp: Intersentia 2013, p. 266.
29) Article 325/3, § 3 Belgian Civil Code.
30) S. Cap and J. Sosson, 'La place juridique du tiers au lien de filiation' in: J.-L. Renchon and J. Sosson (eds.), *Filiation et parentalité, Actes du XIIIe colloque de l'Association Famille & Droit*, Brussels: Bruylant 2014, p. 267.
31) T. Wuyts 2013, p. 320.
32) See article 374, § 1 Belgian Civil Code.
33) Article 376 Belgian Civil Code.
34) Article 375*bis* Belgian Civil Code.
35) Cass. 27 September 2009, *RW* 1990-91, p. 1089.
36) See article 203, § 3, art. 221 and article 1477, § 3 and 5 Belgian Civil Code.
37) Constitutional Court 8 October 2003, nr. 134/2003.

D. 앞 좌석 부모와 뒷 좌석 부모 (Front and backseat parent)

다수부모 육아 합의는 법적 부모들이 비(非)법적 부모들과 나누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유효하게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다수부모 육아 합의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인 베이시스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일어나는 경우 강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非)법적인 부모가 냉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비(非)법적인 부모에게 그들이 이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양(兩)부모로 부모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문제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 즉 중요한 부모(frontseat parents)와 대신 덜 중요한 부모(backseat parents)라고 하는 것에 의해 - 느끼게 할 수 있다. 아이의 법적 부모들은 소위 차의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육권을 가지며 따라서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비(非)법적인 뒷좌석 부모는 토론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의 지위는 후순위적인 것이다. 앞좌석 부모가 항상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는다.[38] 법적 부모 자녀관계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도 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과 학교, 병원 등을 다룰 때 그러하다. 또한 만일 법적 부모가 사망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면, 비(非)법적인 부모가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할 수 있다는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다.

Ⅲ. 법적 다수부모 자격 (Legal multi-parenthood)

양(兩)부모 모델은 전형적인 핵가족을 반영한다. 실제로 아이들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고 두 명 넘는 부모가 자녀를 같이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저지대 국가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양(兩)부모라는 좁은 유형을 넘어서는 법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A. 벨기에서의 다수부모 자격에 관한 시험적인 보고서(Exploratory report on multi-parenthood in Belgium)

벨기에 상원은 다수부모 자격에 관한 시험적인 보고서를 2015년에 출판하였다.[39] 이 시험적인 보고서의 시발점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로이 그들의 가족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법적인 확실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두 명 넘는 사람이 자녀를 갖고 함께 양육하도록 결정할 수는 있지만, 두 명 넘는 사람에게 부모 자격을 허용하거나 두 명 넘는 사람이 부모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했다.[40]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가능성이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41] 상원은 또한 두 명 넘는 사람에게 부모 자격을 허용해 주고 따라서 부모의 책임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몇가지 특이한 질문들을 언급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법적 다수부모의 경우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 다수부모 자격이 자녀의 최선 이익이 되는지?[42] 시험적인 보고서와 여기서 제기된 질문들은 의회가 장래 할 일들에서 한 걸음을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출된 당시에는 어떠한

38)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27.
39) Informatieverslag betreffende een onderzoek van de mogelijkheden voor een wettelijke regeling van meeouderschap. Addendum, *Parl.St*. Senate 2015-16, nr. 6-98/3.
40) *Parl.St*. Senate 2015-16, nr. 6-98/3, p. 2-3.
41) *Parl.St*. Senate 2015-16, nr. 6-98/3, p. 3.
42) *Parl.St*. Senate 2015-16, nr. 6-98/3, p. 5-6.

구체적인 입법적 시도는 없었다.

B. 부모 자격 재평가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 위원회의 다수부모 자격 권고안(Multi-parenthood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Dutch Government Committee on the Reassessment of Parenthood)

a. 서언(General)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에 부모 자격 재평가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조직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현재 혈연과 양육에 관한 네덜란드 법이 현대 사회와 미래 세대의 요구에 맞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UNCRC(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정부위원회는 그 최고의 고려사항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지시했다. 정부위원회는 '21세기에 있어 자녀와 부모' 라는 보고서를 2016년 12월7일에 발간했다.[43] 법적, 교육학적, 사회적, 그리고 의료 윤리적 영역에서 많은 관련된 발전 내용과 전망 등에 관한 토론 후 정부위원회는 네덜란드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68개의 권고안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자녀가 어떠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의했다. 동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좋은 부모 됨(good parenting)'의 일곱가지 뛰어난 핵심요소들을 발굴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적인 개인적 헌신 (2) 육아관계에서 영속성 (3) 육체적인 복지(welfare)를 위한 돌봄 (4) 독립적이고 사회적이고 또한 사회적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의 양육 (5) 가족내에서 자녀의 양육을 조직화하고 모니터링 (6) 부모와 자녀 간의 정체성을 창출 (7) 다른 부모를 포함한 자녀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접촉할 순간들을 확보[44]

정부위원회는 법이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양육상황에서 자녀의 개인적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을 그 시발점으로 삼았다. 이것은 부모자녀관계 창출이나 양육권의 배분에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법은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법은 가장 공통의 현상에 대한 구축 후 다양성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가능한 한 그들이 양육되는 가족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45]

b. 법적 다수부모 자격(Legal multi-parenthood)

정부위원회가 제시한 가장 뛰어나고 전격적인 제안 중 하나는 법적 다수부모 자격의 도입 요구이다. 정부위원회는 친족법의 규정들은 비록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다. 위원회는 또한 자녀를 갖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된 부모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단인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만일 두 명 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자 하는 결정을 했었고, 또한 그들이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책임들을 수행했다면 그의 혹은 그녀의 사실적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 혹은 두명의 법적 부모가 있는 가족단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보호를 이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46] 법적 혈연은 사회적 혈연을 보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영속성과 아이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위원회는 일정한 조건 하에 법적 다수부모 자격의 법적 규정을 권고한다.[47]

43) *Report Government Committee*, 637 p.
44)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375-376.
45)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377-378.
46)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28.
47)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28.

c.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한 조건과 한계 (Conditions and limits to legal multi-parenthood)

정부위원회는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법적 의미에서도) 자녀양육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할 것은 명확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부과할 것을 정당화한다.

-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 모든 의도된 부모들이 동등하고 연대하여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을 의도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 자녀의 인생에서 각 사람이 이행할 역할에 관한 공동의 합의가 없다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의도된 다수부모는 자녀의 임신에 앞서서 자신들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은 양육 의무와 돌봄 의무의 분배, 자녀의 주된 주거지, 각 부모의 각자의 재정의무와 자녀가 가질 성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약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이에게 어떻게 그의 출생과 관련해 알릴 것인지 그리고 의도된 부모가 합의를 조정하기 위한 요청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논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합의할 것이 요구된다.
- 최대 두 가정에 최대 4명의 법적 부모라는 제한은 부과되어야 한다. 다수부모 자격계약은 자녀의 출생모, 유전적 부모, 그들의 인생 동반자에게만 열려 있다. 이것은 다수부모가족의 가장 흔하게 그려지는 상황과 일치한다.
- 다수부모 자격 계약은 법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법원은 다수부모 자격 계약을 전체로서 검토해야 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의 핵심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이 법원에서 완전히 평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의 아이에게는 소송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소송후견인은 의도한 부모들이 합의를 구성할 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법원에게 고지하게 된다.
- 법원에서 다수부모 자격 계약을 승인하고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도한 다수부모는 부모자격승인(인정)증서(deed of acceptance of parenthood(recognition))를 작성해 줄 것을 민사 등록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출생하면 세 명 혹은 네 명의 합의 당사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근거로 출생증명서에 부모로 등록된다. 다수부모에게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여된다.[48]

정부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부모가족들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다수부모 육아가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은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아직까지 학문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도 않다.[49] 만일 분배된 양육권의 행사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양육권이 있는 부모들은 분쟁해결 조항(네덜란드 민법 1권 제253a조)에 접근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들이 공동양육권의 행사에 반대한다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양육 부모의 요청에 의해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수를 줄일 수도 있다. 다수부모 육아 상황 중이라는 맥락에서 만일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은 아마도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고통 받는다고 보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수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50]

d. 다수부모 자격 권고에 대한 의견(Comments on the multi-parenthood recommendation)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권고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다수부모 자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정부위원회에 찬성하고, 정부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조건들이 첫눈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권고안들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것들을 위한 공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51] 법무부는 2017년 2월에 권고안에 대한 공적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

48)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46.
49)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45.
50) *Report Government Committee*, p. 447.
51) Letter to Parliament includ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hild and Parents in the 21st century" report from

했다.[52] 이 회의 참석자들(판사, 연구자, 이해관계자들 등)은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다수부모 자격이 자동적으로 다수부모 양육권(multi-parent custody)을 의미한다는 정부위원회 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의 요건은 의도한 부모들이 다수부모 육아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합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 외에도 8세에서 14세 사이의 8명 그룹 아이들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들 속에서 성장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53] 이 아이들은 출생 때부터 자신들을 양육한 3명 내지 4명의 어른들을 자신들의 부모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생물학적인 부모나 비생물학적인 부모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을 잘 돌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2명이 넘는 부모들과의 가족생활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Ⅳ. 평가 및 결론 (Evaluation and Conclusion)

두 명이 넘는 어른들이 아이를 갖고 같이 양육하기를 선택하는 상황은 오늘날 현실의 일부이다. 이들 다수부모가족들은 제한적이나 늘어나고 있다.[54] 적절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의도한 부모들의 다수부모 육아 합의 계약 체결을 저지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아이와 그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희생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입안자들은 아이와 그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비록 두 명이 넘는 부모가 존재할 때라도 자녀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들 간의 관계에 법적인 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은 의도한 부모들 뿐 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parental authority)을 가지는 법적 부모의 수를 확장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생길 분쟁의 잠재성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분쟁의 위험은 다수부모들이 아이와 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부엌에 요리사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분쟁의 증가는 자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56] 아직까지는 친권을 가진 사람들이

---

the Government Committee on the Reassessment of Parenthood (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veiligheid-enjustitie/documenten/kamerstukken/2016/12/07/tk-kabinetsreactieop-rapport-kind-en-ouder-in-de-21e-eeuw-van-de-staatscommissie-herijking-ouderschap).

52) Congress “Child and Parents in the 21st century” (www.rijksoverheid.nl/regering/inhoud/bewindspersonen/stefblok/documenten/rapporten/2017/05/09/tk-bijlage-i-congres-kind-en-ouder-in-de-21ste-eeuw).

53) Child meetings on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Government Committee(www.rijksoverheid.nl/regering/inhoud/bewindspersonen/stefblok/documenten/rapporten/2017/05/09/tk-bijlage-i-congres-kind-en-ouder-in-de-21ste-eeuw).

54) J.M. Scherpe, *The Present and Future of European Family Law*,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p. 118.

55) See for instance M. Antokolskaia, ‘Legal embedding planned lesbian parentage.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Familie en Recht* February 2014, DOI:10.5553/FenR/.000015; M. Dimsey,‘Multi-parent families in the 21st century’ in: K. Boele-Woelki and T.Sverdrup (eds.), *European Challenges in Contemporary Family Law*,Antwerp: Intersentia 2008, p. 101-112; M. Jacobs, ‘Why Just Two? Disaggregating Traditional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Recognize Multiple Parents’, *Journal of Law & Family Studies* 2007 vol. 2, p. 309-339; F. Kelly, ‘Multiple-parent families under British Columbia’s new Family Law Act: A challenge to the supremacy of the nuclear family or a method by which to preserve biological ties and opposite-sex parenting?’, *U.B.C.L. Rev*. 2014, p. 569-576; M.S. Lewis,‘Biology, genetics, nurture, and the law: the expansion of the legal definition of family to include three or more parents’, *Nev. L.J*. 2016, p. 743-773; J.M. Scherpe 2016, p. 100, 107 and 112-119; F. Swennen 2016, p. 65-67; M. Vonk, ‘Een huis voor alle kinderen. De juridische verankering van intentionele meeroudergezinnen in het afstammingsrecht’, *Nederlands Juristenblad* 2013, p. 2249.

56) E. Pfenson, ‘Too many cooks in the kitchen? The potential concerns of finding more parents and fewer legal strangers in California’s recently proposed multiple-parents bill’, *Notre Dame Law Revue* 2012-13, p. 2058-2063; L. Smith, ‘Tangling the web of legal parenthood: legal responses to the use of known donors in lesbian parenting arrangements’, *Leg.Stud*. 2013, p. 377.

증가할 때 분쟁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57]

다수부모 육아 합의들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심의 후에만 주로 결론 내려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잠재적인 불합의를 해결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58] 이혼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걱정도 있다. 다수부모 육아 계약 당사자 커플들은 별거를 할 수도 있어서 이는 아이들이 셋 내지 네 개의 집들을 방황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촉발한다.[59] 아이의 임신 전에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그러한 별거를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중 일부이다. 윤리학자들은 자녀의 이익은 다수부모 육아의 법적 인정에 대한 반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다.[60] 그들은 이성커플을 부모로 둔 핵가족에서 분리된 가족들이 자녀의 건강한 애정(그들의 앞으로의 발전에 중대한)의 발전을 돕는데 더 낫거나 더 못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측은 새로운 가족형태에 있어 자녀의 행복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발견된 것들과 궤를 같이 한다. 자녀의 행복은 가족의 형태보다는 아이와 그들을 양육하는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아이들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사랑과 지원, 안정을 주는 가족들 안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61] 다수부모 육아 계약에 관련된 부모들은 아이들을 갖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매우 헌신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된 다수부모 육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복에 관해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아이들은 어떻게 서너 명의 부모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다수부모 육아 계약에서 아이들은 그들 가족 상황의 복합성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두 명 넘는 부모를 갖는 것은 아이가 4명 넘는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최대 8명의 조부모까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기대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정한 양의 시간관리를 요하고, 아이가 때로는 단순히 혼자 있기를 원할 때도 그렇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과거에도 몇 번씩 선구적인 가족법 개정을 채택했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001년에 동성혼을 열은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벨기에는 2년 후 이를 따랐다. 2014년 네덜란드 입법은 아이의 모의 여성 파트너가 아이의 출생 때부터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벨기에는 1년 뒤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2016년에 부모자격의 재평가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위원회는 법적 다부수모 자격에 대한 도입을 권고했다. 이런 변혁적인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네덜란드는 유럽의 가족법 개정에 있어 다시금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정말로 채택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것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토론을 통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끝)

2019년 7월, 네덜란드 정부는 법적 다수부모자격에 관한 입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에서는 두 명 이상에게 완전한 부모 책임을 부여하거나 두 명 이상이 부모가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갈등 위험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다수부모가 사회보장혜택, 세법 및 시민등록 분야에서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62] 다수부모가족 문제가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번역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교정 권지연 상담위원 / 이지호 실습생

57) D. Cutas, 'On triparenting. Is having three committed parents better than only having two?', *J. Med. Ethics* 2011, 735-738; J.M.Scherpe 2016, p. 110.

58) M. Lotz, 'The two parent limitation in ART parentage law' in: D.Cutas and S. Chan (eds.), *Families - Beyond the Nuclear Ideal*, London: Bloomsbury 2012, p. 34-48.

59) L. Smith 2013, p. 377.

60) M. Lotz 2012, p. 45-46; C. Munthe and T. Hartvigso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nd the basis of family policy: The issue of reproductive caring units' in: D. Cutas and S. Chan (eds.), *Families - Beyond the Nuclear Ideal*, London: Bloomsbury 2012, p. 49-63.

61) S. Golombok, *Modern Families. Parents and Children in New Family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202 and 214.

62) 이후의 경과 질의에 대한 2021.4.6. Ingrid Boone교수의 답변 메일 내용.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 사실혼 해소 후에도 상담 통해 폭력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

사건번호 2019버7 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등 11회

상담기간

2019. 9. 30.~ 2020. 6. 9.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19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돌아간 후 2달여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 연락이 되어 상담일정을 잡은 후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다가 12월 이후에 비로소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상담에 임하기 이전에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배려를 느끼지 못하여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였다. 사실에 대한 이해에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실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고,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였다.

행위자는 성격검사를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대화법이라고 인정하고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의 접촉은 없었으며 행위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폭력을 재발한 사실은 없다. 행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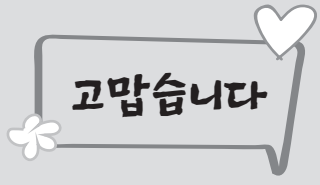

2021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김민지, 김선경, 김수정, 김준호, 김지우, 김지윤, 김혜원, 김효진, 류지원, 문예빈, 박성환, 박지희, 신수민, 예성은, 오지현, 윤채은, 이상은, 이송현, 이시현, 이주연, 임지윤, 장선우, 장성윤, 전우인, 정수나, 정유나, 조예람, 조예진, 최세은, 한승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김봉환 님

호박목걸이

메리 린다 테일러 지음
송영달 옮김

책과함께, 2016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황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 고종이 승하한다. 이 사건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인 인산일인 3월 1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메리 린다 테일러와 앨버트(브루스) 테일러 부부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 아기 엄마 메리는 출산 후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아기 대신 종이뭉치를 든 수간호사가 자신의 침대 이불 밑에 그 종이뭉치를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 "만세, 만세" 소리가 들리고 수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만세란 한국이 천 년 만 년 계속되라는 뜻이에요. 한국인들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기 위해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그리고 그 종이뭉치는 대한독립선언서였다. 아기를 보러 와서 이 선언서를 발견한 아기 아빠 브루스는 아들을 처음 만난 것보다 그 문서의 발견에 더 흥분하며 그날 밤, 동생 빌의 구두 뒤축에 그 사본과 그에 관해 자신이 쓴 기사를 감추어 도쿄로 보냈다. 그리하여 우리의 3.1운동은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메리의 책『호박목걸이』가운데 '구슬 열여덟, 만세 소리와 함께 아들이 태어나다'편에 나온다.

메리 테일러는 1889년 영국 첼트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연극배우가 되어 동양 각지를 순회 공연하던 중 일본에서 만난 브루스(본명은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와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917년 한국에 왔다. 1923년 인왕산 자락에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집 '딜쿠샤'를 짓고 1942년까지 살다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 그 후 남편의 유언에 따라 1948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시아버지 무덤 옆에 남편을 묻었고, 1982년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쳤다. 시아버지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는 한국에 온 최초의 금광사업가로 아들 브루스와 운산금광을 운영했으며 브루스는 금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미국 UP 통신의 기자로서 전 세계에 최초로 3.1운동 소식을 타전했으며 후에 일제의 제암리 학살 소식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과 불화하였다.

이후 1992년 그녀의 아들 브루스 티켈 테일러가 메리의 유고를 정리하여 이 책『호박목걸이』를 펴냈으며, 그의 딸이자 앨버트 테일러와 메리의 손녀 제니퍼는 아버지 브루스가 세상을 떠나자 2016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할아버지의 무덤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렸다. 그는 2018년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유물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해 2018년에는 '딜쿠샤와 호박목걸이 전'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에는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지만 이젠 옛집의 공간에서 그 유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2월 26일 '딜쿠샤 전시관'이 개관했으며 3월 1일부터 일반 공개를 시작한 것이다.

책『호박목걸이』는 구슬 서른넷으로 이루어졌다. '구슬 하나 깊어지는 전운, 1941'을 시작으로 '구슬 서른넷 6년 만의 서울 방문, 1948'을 마지막으로 메리 자신의 어린 시절 회상부터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까지를 다루는데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이루어졌던 한국에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외국인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남긴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그러한 면에서 '구슬 서른셋 조선의 양반 김주사'이야기가 무엇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주사 즉 김상언 같은 이들이 우리 역사의 귀중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믿는다. 가까운 시일에 '딜쿠샤'를 방문하게 될 듯하다. 가서 메리의 호박목걸이도 보고 김주사의 태극기도 보고 싶다.

이숙현 편집부장

사 실 혼 ❶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Q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편과 동거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친인척은 물론 주변사람들은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지요?

A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학설에서는 이를 준혼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예를 들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예를 들면 상속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어떻게 할까요」중에서

Q 저는 얼마 전 제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아주 어릴 때 사망한 저의 아버지의 채권자 A씨가 제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아 예금을 인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생전에 A씨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1993년 2월경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A씨가 어머니와 저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93년 12월경 결국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은 뒤 A씨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10년 주기에 맞춰 두 차례 더 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가장 최근의 판결에 따라 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총 3차례의 판결 중 가장 최근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으며 가장 최근의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3차례나 판결을 받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에 저는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장 최근의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A씨가 제 예금을 압류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가부를 가려야 하고,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귀하가 직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등)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년 5월 27일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가부를 가려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지만,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다수의견은 현행 민법 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입법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고, 반대의견은 입법이 아닌 해석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 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민법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순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손명진 변호사

영화 이야기

미나리

감독 정이삭

출연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노엘 케이트 조, 앨런 김

1980년대 초중반 즈음, 제이콥(스티븐 연)과 모니카(한예리) 부부는 의젓한 딸 앤(노엘 케이트 조)과 심장이 약한 아들 데이빗(앨런 김)과 함께 아칸소의 외딴 농장에 자리 잡는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살다가 갑자기 낯선 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것에 대해 모니카는 불만스러워하지만,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일구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순자(윤여정)가 딸 모니카를 위해 한국을 떠나 이곳에 도착한다. 순자의 가방 속에는 고춧가루와 멸치, 밤과 약초가 가득하다. 앤과 데이빗은 일반적인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순자가 영 서먹서먹하다.

대사로 언뜻언뜻 제시되는 제이콥과 모니카의 삶에는 제법 큰 굴곡이 존재한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했고 미국으로 건너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몇 년을 버텼다. 모니카의 아버지는 6.25 당시 사망했고 엄마 순자가 모니카를 홀몸으로 키웠기 때문에, 모니카는 어머니에 대한 부채감이 있다. 제이콥은 아마도 농촌 출신으로 추정되며, 부모와 동생들의 희망을 짊어진 장남이다. 부부는 이민 생활 초기에 병아리 감별사로 뼈 빠지게 일하며 돈을 적지 않게 모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제이콥의 한국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모니카가 이제부터는 두 아이의 미래에 온전히 투자하며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찰나, 제이콥은 캘리포니아를 떠나 농장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한국의 가족들을 향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간신히 벗어났을 때, 제이콥은 또다시 어린 두 자식들에게 '멋진 아빠', '뭔가를 해내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의 새로운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그는 다짐하듯 데이빗에게 말을 건넨다. "병아리 수놈들은 맛이 없어.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고난은 계속 닥쳐오고, 제이콥과 모니카는 "미국으로 떠나서 서로를 구원해주자"라던 젊은 시절의 약속마저도 희미해지는 걸 느낀다. 〈미나리〉 속 가족은 어쩌면 미국 개척기의 상징과도 같은 이야기,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책 〈초원의 집〉 시리즈 같은 모습, 건전하고 행복하며 근면 성실한 미국식 가족주의의 화신 같은 모습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된 곳에서 점점 쪼들리는 삶을 견뎌내는 와중에 한국식 가족주의의 정념이 더 크게 끼어든다면, '개척'의 꿈은 전면적인 타협과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미나리〉의 갈등에는 가족 간의 대립뿐 아니라 인종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데이빗은 앞으로도 백인 친구 조니처럼 편안하게 카우보이 흉내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앤은 나름대로의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온갖 아시안 언어의 멸칭을 구사하는 히스패닉계 소녀와 온전한 교우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 1980년대의 아칸소 주에서 인종을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나리〉는 그에 대해 아주 약간의 희망을 남겨둔다. 이를테면 제이콥 가족의 유일한 이웃인, 기독교 광신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딱히 해를 끼치지는 않는 백인 폴이 있다. 폴에게 우월감과 낭패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던 제이콥이 결국 영화 말미에 이르러 '여기선 여기의 방법을 따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폴의 애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미국 내 아시안계를 향한 증오 범죄의 현재 진행형을 아예 잊을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여기저기 다 넣어서 요리할 수 있는 '원더풀' 미나리라는 상징을 통해 이미 미국에 뿌리내렸고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영화 〈미나리〉의 방식은 상당히 세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미나리〉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쓰였던 존재는 제이콥과 모니카의 장녀 앤이다. 데이빗처럼 병약하지 않고(그래서 부모가 크게 신경쓸 일이 없고), 조숙한 공부벌레의 기질이 보이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그 옆에 앉아 제법 위로를 건넬 줄도 아는, 그야말로 한국 가정에서 '큰딸'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 자체의 앤. 아버지 제이콥의 흔들렸다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접하며 성장하게 될 데이빗과 달리, 앤이 모니카와 순자의 험난한 삶을 지켜보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에 대해, 한국의 여성 관객들이라면 씁쓸한 예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서울가정법원 방문, 법원장과 면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김인겸 법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날 본소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족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 날 면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와 전안나 부장판사, 백경현 판사가,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면담 후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의 안내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와 상담소가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실 방문 등이 있었다.

두 차례 직원재교육 진행
문화적 소양과 실무 능력 함양

5월 11일 본소 강당에서 직원재교육으로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영화 〈카사블랑카〉를 감상하였다. 1943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영화 〈카사블랑카〉는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100대 영화 중 2위(1998년), 3위(2007년)를 차지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누아르이자 낭만적인 로맨스 컬트 영화라고 지칭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선전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대 눈동자에 건배"라는 명대사는 영화를 통해 사랑과 자유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직원들은 1942년에 제작된 고전 영화를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마음에 쉼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7일에는 본소 대강의실에서 「가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의 강의로 직원재교육이 있었다. 가사소송의 쟁점들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공동양육을 인정한 판례, 재판상 이혼 시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양육비산정의 적정한 기준, 가정법원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 산정이 되는 재산의 기준, 연금분할 청구 시 혼인기간의 판단,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유증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와 관련한 내용을 대법원과 가정법원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번 직원재교육을 통해 가사소송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쟁점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구조 업무에 있어 본소 상담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김명순 이사, 후원금 2,000만원 기부

상담소 김명순 이사(세은심리상담연구소 성수점 소장)는 지난 5월 6일 본소에 운영후원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명순 이사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오랜 기간 상담소 및 상담소 교육부에서 자원봉사 해왔으며 현재도 본소의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5.10.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및가족법교육 / 비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2.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및가족법교육 / 비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2. 애란원-인지 양육비청구 관련 법교육, 상담 / 대면교육
- 유혜경 상담위원

5.20. 폭력예방교육-숭의여중 / 비대면 교육
- 박상진 상담위원

5.21.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수원시민관사례관리 임파워먼트-고위험군사례관리 / 비대면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5.25. 애란원-인지 양육비청구 관련 법교육 및 상담 / 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 (4.26~8.31) 조주현, (5.17~6.14) 이지호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 회의에 참석하였고, 26일에는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설명회의에 김현옥 과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2021년 5월 상담통계

총 건수 5,406

법률상담 (4,775)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순회
999	3,690	76	1	1	8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80	55	96

• 인터넷 정보 이용 15,544

2021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406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775건(88.3%), 화해조정 480건(8.9%), 소장 등 서류작성 55건(1.0%), 소송구조 96건(1.8%)이었다.

법률상담 4,77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0.9%→1.0%), 양육비(7.4%→8.1%), 면접교섭권(2.7%→3.2%), 인지(0.9%→1.1%), 친생부인(0.8%→1.0%), 친생자존부(2.1%→3.2%), 입양(1.0%→1.1%), 파혼(0.1%→0.2%), 혼인무효·취소(0.4%→0.5%), 이혼무효·취소(0.3%→0.5%), 부양(1.4%→2.0%), 유언·상속(6.8%→7.0%), 가족관계등록부(3.3%→3.6%), 친양자(0.5%→0.7%), 미성년후견(0.5%→0.8%), 성년후견(2.9%→3.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1%→0.2%), 채권·채무(0.2%→0.3%), 파산(2.4%→2.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77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99건(20.9%), 전화상담 3,690건(77.3%), 인터넷상담 76건(1.6%), 서신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 순회상담 8건(0.2%)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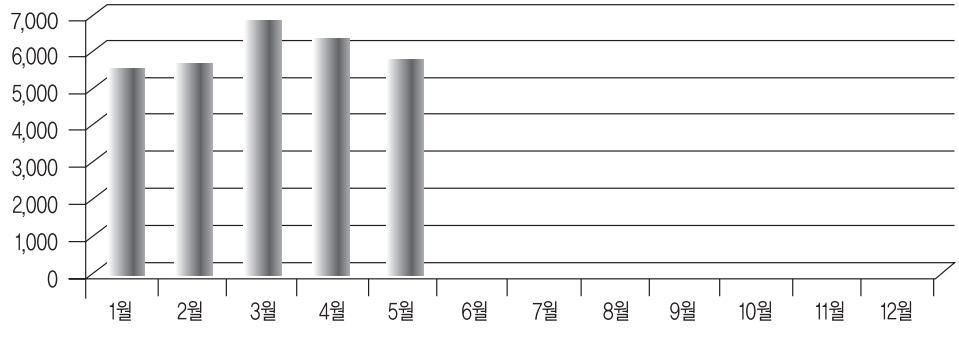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화풀이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77
담당 : 김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52세)는 2005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4년 11월경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고가 외출을 하면 원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자주 전화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술을 마시면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목을 졸랐고, 원고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사건본인은 집을 나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201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4.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8:00까지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상호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에 의한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늦어도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48세)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

인(남, 6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그때마다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 특히 사건본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심한 매질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졌고, 원고가 이를 말리면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이 심해지면서 원고도 함께 맞았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9년 10월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과 함께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전 동거녀 및 여자 지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3.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잦은 폭행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120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8세)와 피고(남, 23세)는 2019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임신 중에 피고의 폭언, 폭행과 시부모님의 언어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보호하고자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준비하던 중에 피고로부터 배를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해 2019년 7월경 위기주택에 입소하였다. 현재 원고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별거 중이며, 홀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또한 출산 전 스트레스로 가정폭력상담과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1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9.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혼인 직후 체류문제로 본국으로 자진출국한 후 남편과 연락이 끊긴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404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5세)와 베트남 국적을 가진 피고(여, 44세)는 2010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0년 9월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의 비자 발급을 위해 2010년 10월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비자 발급을 받아 한 달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과거 위조여권을 통해 불법체류를 하여 강제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당황스러웠으나 피고가 일단 자진 출국하여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점차 피고와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지 오래되었다. 원고는 장애인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0.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1년 7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7월 12일, 7월 26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8월은 휴강)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장 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 시	강 의 제 목
6월 24일	외도
7월 22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9월 23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10월 28일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6월 10일	화와 친구하며 살아요.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7월 8일	정신건강의 중요성 –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는 노력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9월 9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1년 6월 / 8월 / 10월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내용 :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2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 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14:00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및 비대면 화상회의(ZOOM) 접속

좌　　장 :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주제발표 :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안내 ▶

- 코로나 19로 인하여 본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본 상담소 회원 등 이외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2021년 6월 21일(월)까지 메일(webmaster@lawhome.or.kr) 또는 전화 (1644-7077)로 사전에 신청하신 분에게는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예약 신청하신 분들은 화상회의(ZOOM)로 심포지엄에 실시간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거리두기 부패! 가까이 두기 청렴!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